#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(현장발급)

## 1. 발급신청시 주의사항

-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하여 발급해주시길 바랍니다.

**※ 중소기업 인증 아닙니다**

- 가까운 곳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남부센터/ 서초구 서초중앙로117




## 2.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기준

: 다음 사항(가~다)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

**발급기준**

다음 사항(가~다)을 모두 만족해야 함

**가. 소상공인 기준(연평균매출액 + 상시근로자수)을 만족하는 자**

>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서 소상공인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

① (연평균매출액)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[별첨1]
연매출액을 통해 소기업 여부 확인

- 단,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(2019~2020)은 신청서(연매출액)로 대체(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발급 절차 준용)

② (상시근로자수) 주된 사업*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
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, 광업은 10인 미만

-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(「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」 제4조, 제7조)

**나.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**

- 고유번호증을 교부받는 사회단체 및 법인은 신청 불가(예 : 어린이집 등)

**다. 비영리 개인사업자·법인, 단체 또는 조합이 아닌 경우**
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상 '기업' 중 영리사업자에 한정.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개인사업자는 신청 제외(비영리사회적기업, 어린이집, 장기요양 등)
- (유의) 법인 등록되어 있는 영리 조합의 경우 신청가능(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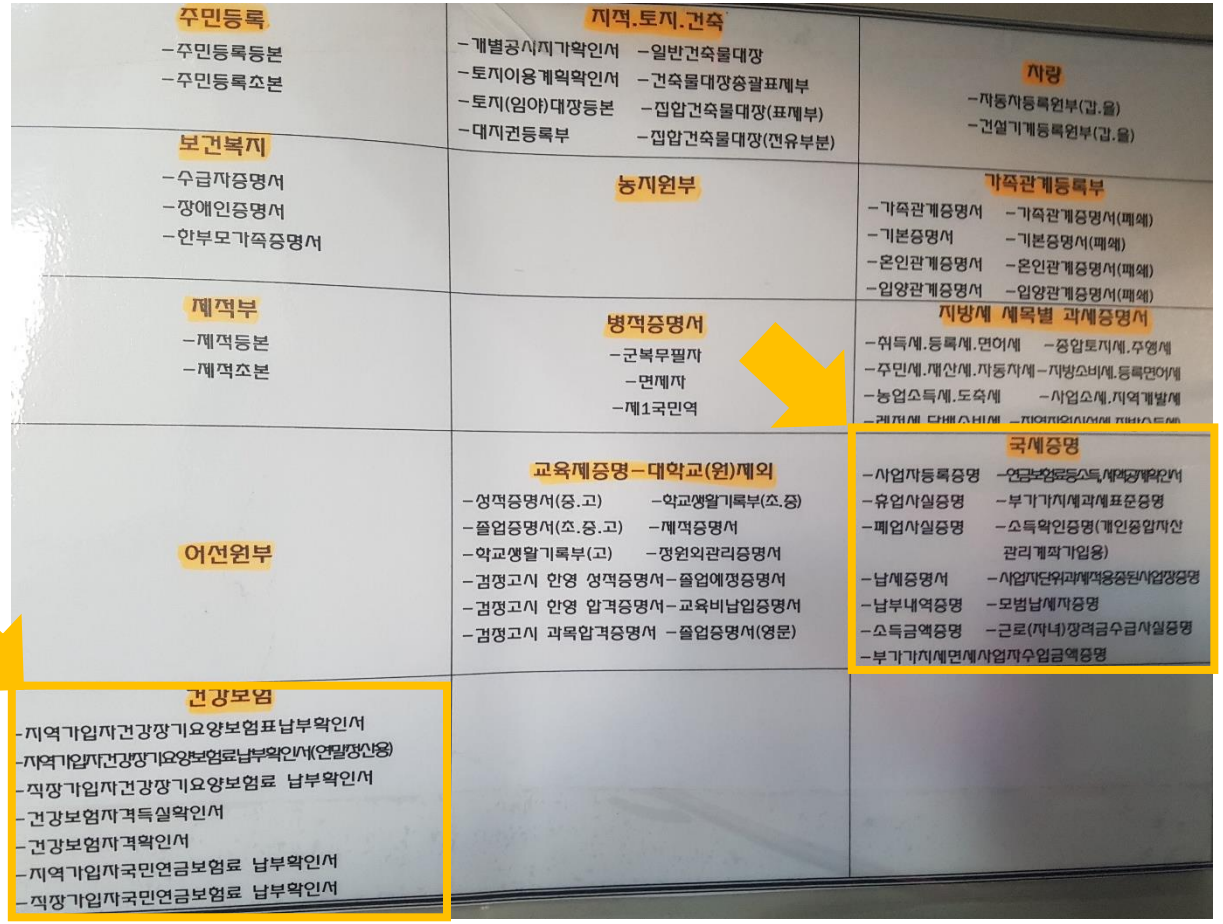
# 3-1. 아래 필요 서류 지참 후, 현장 방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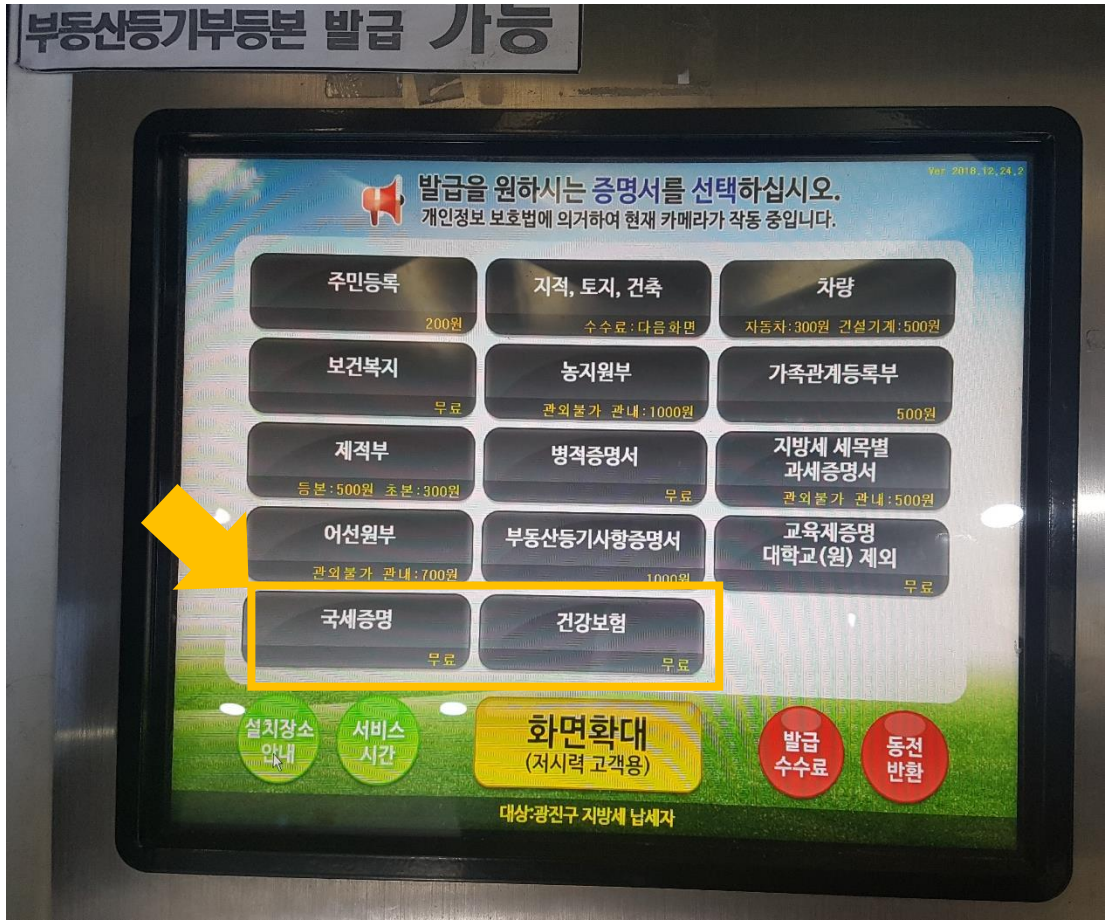
1. **신청서**
2. **개인정보동의서**
3. **위임장(대리인 신청시)**
4. **신청자 신분증**
5. **방문자 신분증(대리인 신청시)**

**※아래 3가지 서류는 온라인(홈택스, 건강보험공단홈페이지) 또는 주민센터 무인발급기로 발급 가능합니다.**

6. **사업자등록증명원**
7. **매출액 확인 서류**
   - 면세사업자 : 2019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
   - 과세사업자 : 2019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
8. **상시근로자 확인서류**
   -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: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과거이력 포함)
   -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(상시근로자 2인 이상) : 제출서류 필요없음

# 3-2. 필요서류 현장발급 : 주민센터방문후, 민원무인발급기 이용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, 사업자등록증명원, 수입금액증명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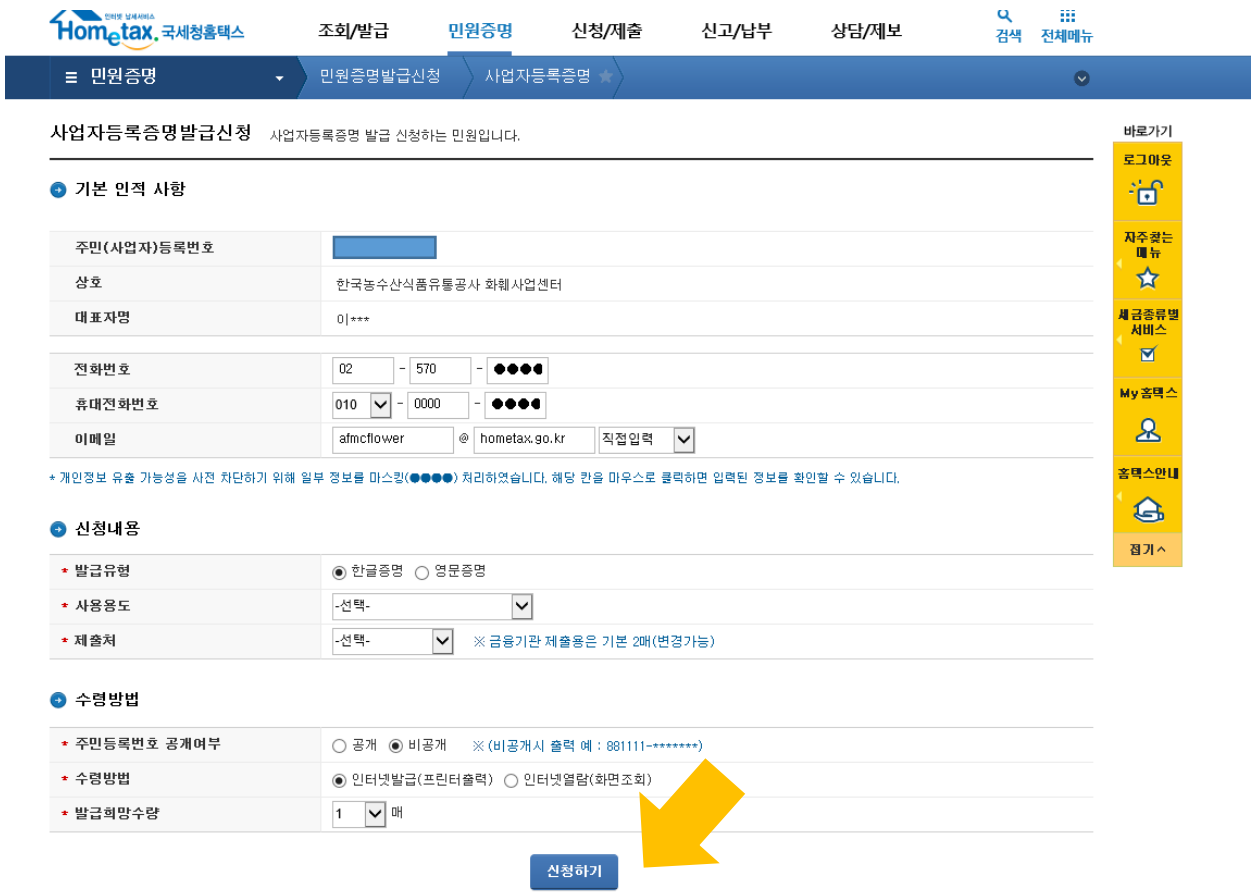
# 3-3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사업자등록증명원,수입금액증명 발급 : 홈택스/인증서 필

1. 홈택스 접속→ 민원증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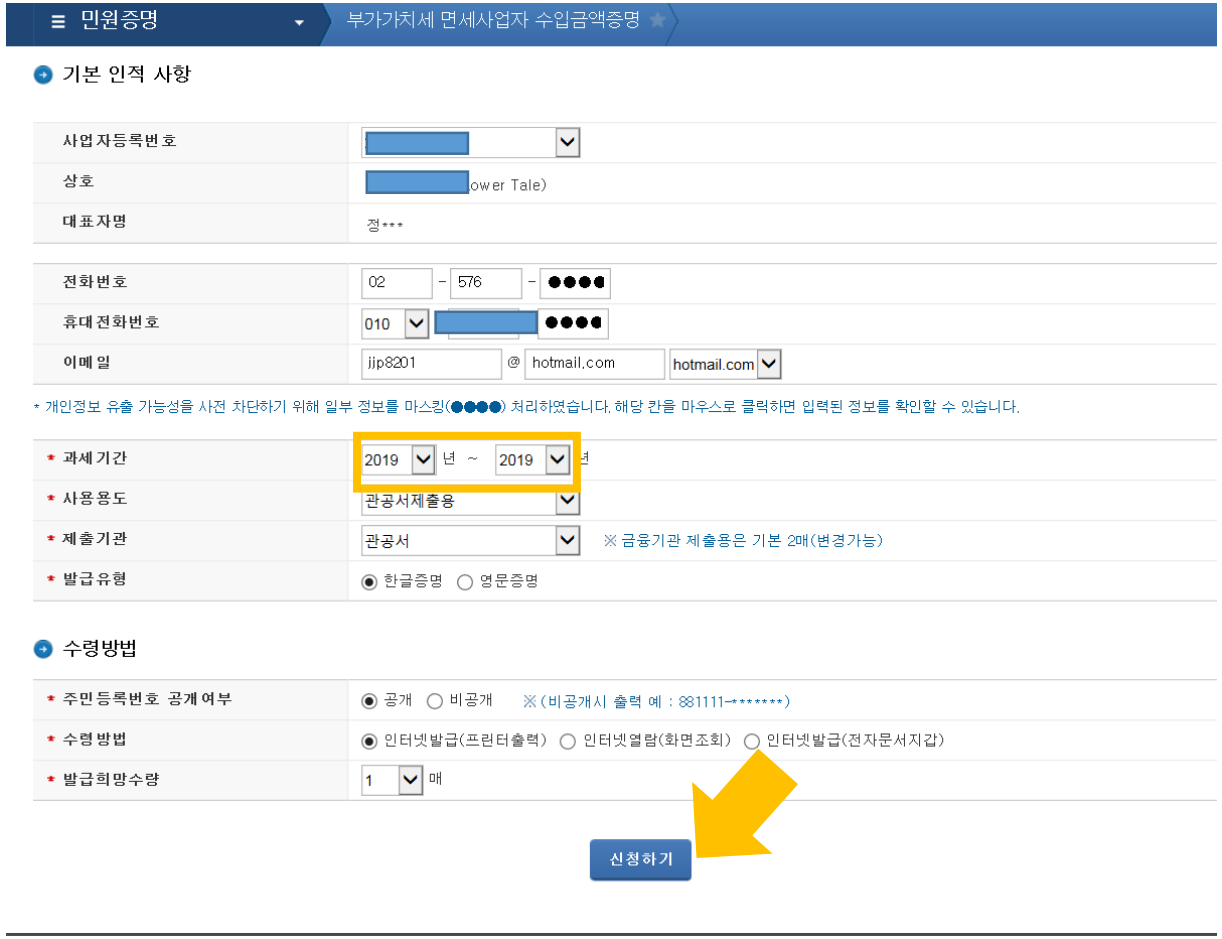
# 3-3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사업자등록증명원,수입금액증명 발급 : 홈택스/인증서 필

## 2.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신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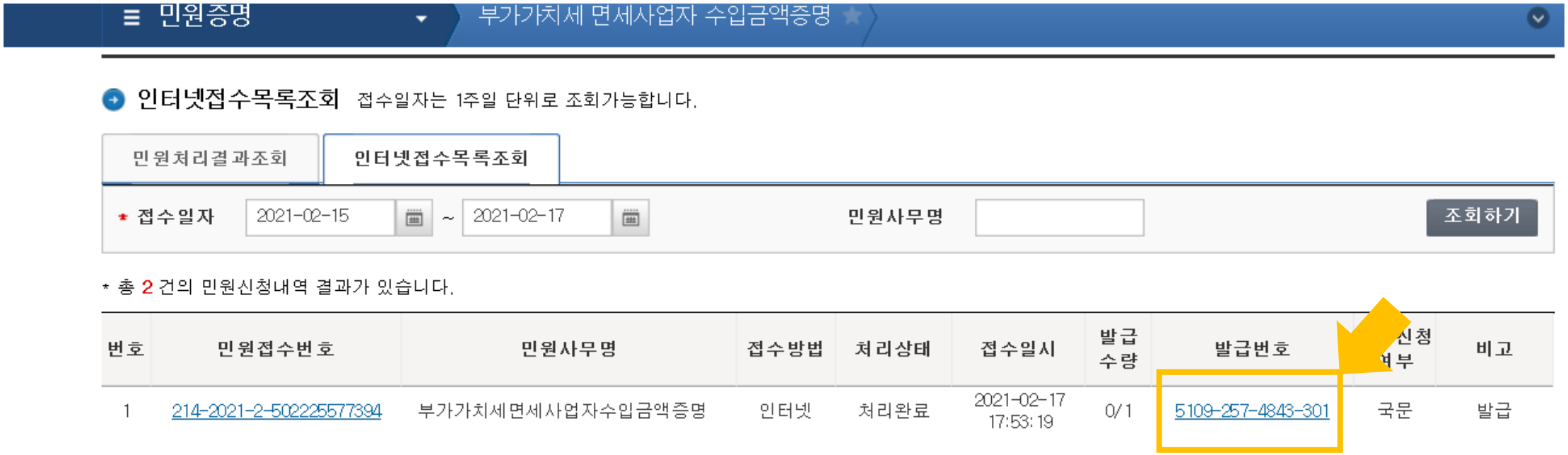
# 3-3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사업자등록증명원,수입금액증명 발급 : 홈택스/인증서 필

## 3. 매출증빙서류 발급 신청(과세기간 : 2019년)



# 3-3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사업자등록증명원,수입금액증명 발급 : 홈택스/인증서 필

4. 발급 완료 후 발급번호 클릭 후, 저장



# 3-4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사업자등록증명원,수입금액증명 발급 : 홈택스/인증서 필

## ① 사업자등록증명 예시



( 1 / 1 )

국세청 nts.go.kr

| 발급번호 | 사업자등록증명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
| 3268-716-5160-381 | (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) | 즉시 |

| | |
|---|---|
| 상호(법인명) | [redacted] r Tale) |
| 사업자등록번호 | |
| 성명(대표자) | |
| 주민(법인)등록번호 | |
| 사업장소재지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, 13호(양재동, 농수산유통공사지하) |
| 개업일 | 1998년 03월 11일 |
| 사업자등록일 | 1998년 03월 18일 |
| 업태 | 소매 |
| | |
| 종목 | 생활 |
| | |
| | |

| 공동사업자 | 성명(법인명) | 주민(사업자)등록번호 |
|---|---|---|
| | 해당사항이 없습니다. | |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2021 년 2 월 17 일

| | |
|---|---|
| 접수번호 | 502225549554 |
| 담당부서 | 민원봉사실 |
| 담당자 | 양준권 |
| 연락처 | 02-3011-6556 |

서초세무서장 (인)

## ② 수입금액증명 예시



( 1 / 1 )

국세청 nts.go.kr

| 발급번호 |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| 처리기간 |
|---|---|---|
| 5109-257-4843-301 | | 즉시 |

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성명 | [redacted] | 주민등록번호 | [redacted] |
| 상호 | [redacted] ower | 사업자등록번호 | [redacted] |
| 업태 | 소매 | 종목 | 생활 |
| 사업장 |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, 13호(양재동, 농수산유통공사지하) | | |

(단위 : 원)

| 과세기간 | | 수입금액 |
|---|---|---|
| 부터 | 까지 | |
| 2019/01/01 | 2019/12/31 | 218,995,636 |

위와 같이 증명합니다.

※ 위 내용은 발급일 현재 상황으로서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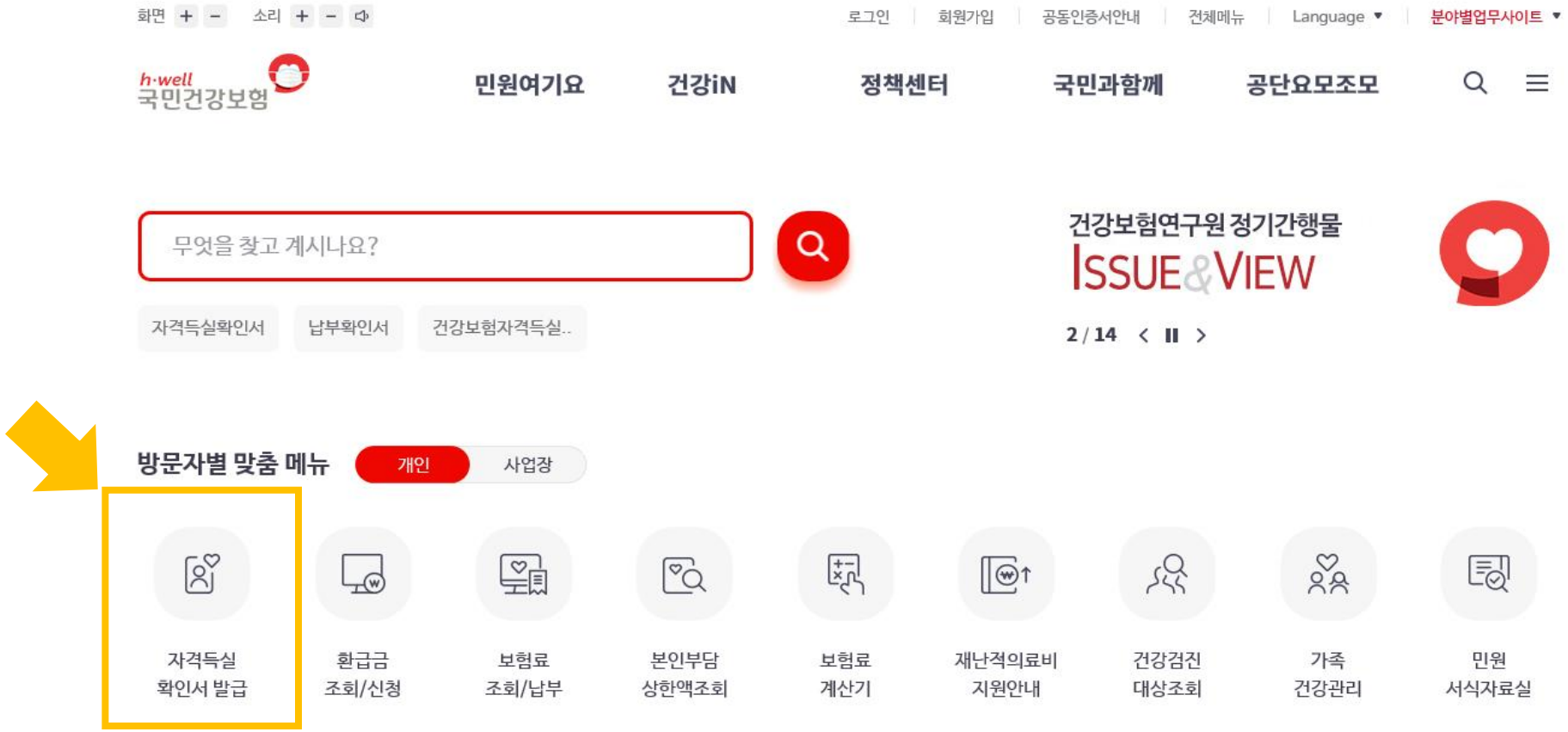
| | |
|---|---|
| 접수번호 | 502225577394 |
| 담당부서 | 민원봉사실 |
| 담당자 | 설정란 |
| 연락처 | 02-3011-6200 |

2021년 2월 17일

서초세무서장 (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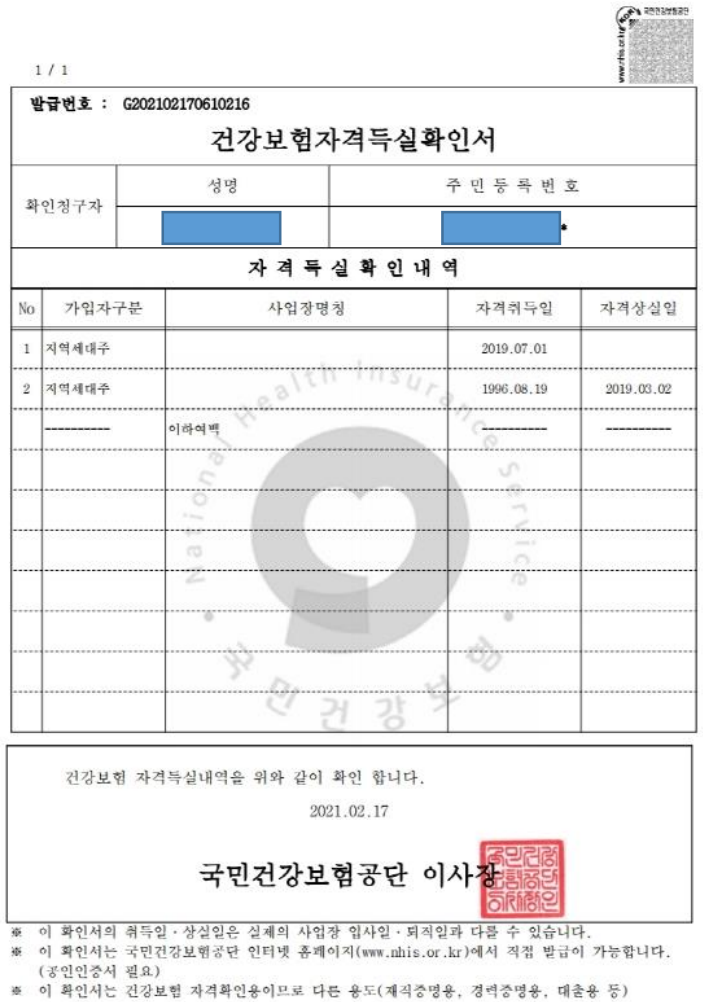
# 3-4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상시근로자확인서류 : 건강보험공단/인증서 필

1. 건강보험공단 접속 후,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클릭



# 3-4. 온라인 필요서류 발급방법
# : 상시근로자확인서류 : 건강보험공단/인증서 필

2. 발급 예시



1 / 1

발급번호 : G2021021706102l6

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
| 확인청구자 | 성명 | 주 민 등 록 번 호 |
|---|---|---|
| | [redacted] | [redacted] |

자 격 득 실 확 인 내 역

| No | 가입자구분 | 사업장명칭 | 자격취득일 | 자격상실일 |
|---|---|---|---|---|
| 1 | 지역세대주 | | 2019.07.01 | |
| 2 | 지역세대주 | | 1996.08.19 | 2019.03.02 |
| | ---------- | 이하여백 | ---------- | ----------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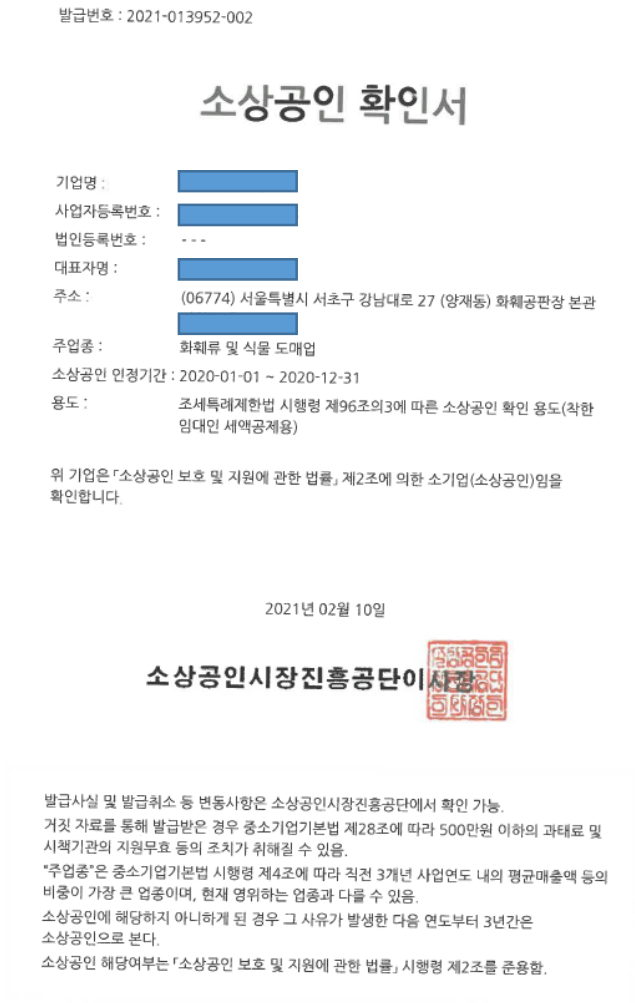
건강보험 자격득실내역을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.

2021.02.17
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※ 이 확인서의 취득일 · 상실일은 실제의 사업장 입사일 · 퇴직일과 다를 수 있습니다.
※ 이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(www.nhis.or.kr)에서 직접 발급이 가능합니다. (공인인증서 필요)
※ 이 확인서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용이므로 다른 용도(재직증명용, 경력증명용, 대출용 등)

# 4.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완료



발급번호 : 2021-013952-002

## 소상공인 확인서

기업명 : [redacted]

사업자등록번호 : [redacted]

법인등록번호 : ---

대표자명 : [redacted]

주소 : (06774)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(양재동) 화훼공판장 본관 [redacted]

주업종 : 화훼류 및 식물 도매업

소상공인 인정기간 : 2020-01-01 ~ 2020-12-31

용도 :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에 따른 소상공인 확인 용도(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용)

위 기업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의한 소기업(소상공인)임을 확인합니다.

2021년 02월 10일
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[redacted]

발급사실 및 발급취소 등 변동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가능.

거짓 자료를 통해 발급받은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시책기관의 지원무효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.

"주업종"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직전 3개년 사업연도 내의 평균매출액 등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이며, 현재 영위하는 업종과 다를 수 있음.

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

소상공인 해당여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를 준용함.